2-5 법학전문대학원 학칙

2009. 3. 1. 제정
2023. 4. 28. 개정

주무부서 : 법학전문대학원 교학지원팀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제1조(목적) 이 학칙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하 "전문대학원"이라 한다)의 교육이념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직,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16.>

제2절 교육 이념 및 목표

제2조(교육이념) 전문대학원은 '의와 참'의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유능한 참 법률가 양성'을 교육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1.03.01.>

제3조(교육목표) 전문대학원은 교육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책임있는 공공정책법률가, 봉사하는 시민생활법률가, 공정한 형사전문법률가, 실용적 기업법률가, 개방적 국제법률가, 후원하는 문화법률가의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

제3조의2(운영의 기본원칙) 전문대학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1.03.01.>

제3조의3(자체평가) 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및 시설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1.5.16.>

제3절 직제, 교육·연구지원 시설 및 부속시설

제4조(직제) 전문대학원 직제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육·연구지원·부속 시설) ① 전문대학원에 교육,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법학도서관, 법학연구소, 모의법정, 정보통신시설, 세미나실 등을 둔다.

② 교육・연구지원・부속 시설 및 법학연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절 교원의 임용 및 교수시간

제6조(전임교원의 신규채용) ① 전임교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동일대학 출신 학사학위 소지자가 신규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된 전임교원이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법학이 아닌 경우에는 그를 본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2.>

② 전임교원을 신규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이 준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

1. 법정전임교원 중에 비법조실무경력교원이 포함되어 있을 것
2. 법정전임교원 중 실무경력교원(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및 5년 이상 실무종사자)의 비율이 1/5이상일 것
3. 전임교원 중 여성 교원의 비율이 1/10 이상일 것
4. 신규채용 전임교원 중 여성교원의 비율이 1/5이상일 것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 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9.2.>

제7조(겸임교수 등) ① 전문대학원에 겸임교수・명예교수・대우교수・특임교수・석좌교수・객원교수・초빙교수・시간강사 등(겸임교수 등 이라 한다)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05.16.>

② 겸임교수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임교원의 교수시간) ① 전임교원의 교수시간은 원칙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4항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16.>

② 제1항의 교수시간에는 대학 내 다른 학과에 대한 출강이나 다른 대학 및 기관에 대한 출강시간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임시의 법과대학과 일반대학원 법학과에 대한 출강의 경우에 한하여 학기당 3시간 이내에서 제1항의 교수시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05.16.>

제9조(전임교원의 재임용) 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재임용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교수회 및 위원회

제10조(교수회) ① 전문대학원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으로 구성되는 교수회를 둔다.
② 전문대학원장이 교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교수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④ 교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입학 · 수료 · 진급 및 졸업에 관한 사항
3. 교과의 설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학생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사에 관한 중요사항

제11조(전문대학원위원회) ① 전문대학원에 중앙대학교 전임교원 7인을 위원으로 하는 전문대학원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전문대학원장으로 한다.
③ 전문대학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입학 · 수료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2. 전문대학원의 설치·폐지와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4. 전문대학원에 관한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문대학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④ 전문대학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기타 위원회) ① 전문대학원에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목표심의위원회, 장학위원회, 학사관리위원회, 입학전형위원회, 입시공정관리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재정운영심의위원회, 교육과정평가 · 개발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특성화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전문대학원 학사일반

제1절 학위과정 및 학생정원

제13조(학위과정) 전문대학원에는 전문석사학위과정, 전문박사학위과정 및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05.16.>

제14조(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정원) ①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정원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정원책정기준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정하며, <별표1>과 같다. <개정 2011.05.16., 2017.11.29.>

②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의 학생정원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절차를 거쳐 확정・시행한다. <개정 2011.5.16., 2017.11.29.>

제2절 입학 및 편입학

1.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제15조(입학전형의 주관)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은 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주관과 책임 하에 진행된다.

제16조(지원자격 등) 전문대학원의 지원자격, 전형요소,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17조(선발 인원 및 방법) ① 선발인원은 총 정원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② 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하여 총 입학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비법학사로, 3분의 1 이상을 타교출신자로 선발한다.

제18조(신입생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중앙대학교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입학으로 간주한다.

2. 편입학 전형

제19조(전형시기) 편입학 전형은 연1회 시행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전문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20조(편입학 지원자격 등) 전문대학원의 편입학 지원자격, 전형요소, 전형방법에 대하여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입학전형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1조(선발인원) 선발인원은 전문대학원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2조(편입생 등록) 입학이 허가된 자는 중앙대학교 학칙 제22조(등록 및 납입금)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하여야 입학으로 간주한다.

제3절 등록・휴학・복학・자퇴・제적・재입학

제23조(등록 및 납입금) ① 학생은 매학기 초 기일 내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6회 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③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등록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등록은 소정의 납입금(수업료, 입학금, 기타 납입금)을 납부하고, 수강신청을 함으로써 완료된다.

⑤ 입학금 또는 수업료의 반환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5.9.2.>

제24조(휴학) ① 일반휴학의 신청기간은 매학기 개강 4주 전부터 개강 후 4주 이내로 한다.

②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속 1개월 이상 수학이 불가능한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휴학할 수 있다.

③ 1학년에 한 하여는 군입대 및 질병 이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④ 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다만, 편입생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4. 28.>

⑤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특별휴학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28.>

1. 군입대 휴학
2. 유급휴학
3. 육아휴학(임신, 출산, 육아)
4. 학사경고 휴학

⑥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 연한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4. 28.>

제25조(복학) ① 휴학한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소정기간 내에 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하여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수행으로 휴학한 자는 전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를 첨부하여 복학하여야 한다.

② 복학을 허가하는 시기는 매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26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전문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27조(제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
2. 매학기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3. 통산 2회 유급 또는 연속 3회 학사경고를 받은 자 <개정 2011.05.16.>
4. 휴학기간을 제외하고 재학연한 5년을 초과한 자 <개정 2011.05.16.>
5.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규정 위반자 <개정 2011.05.16.>

제28조(재입학) ① 자퇴 및 제적된 자 중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재학연한 내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을 할 수 있다.
② 재입학의 허가는 다른 법령에 의하지 않는 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외에 재입학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징계 및 재학연한의 초과로 인하여 제적된 자에게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3장 수업 및 교육과정

제1절 수업

제29조(학년도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학기는 다음과 같이 나눈다. 다만, 학사운영상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3. 계절학기 : 하계 또는 동계방학 중 개설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수업연한)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1.05.16.>

제31조(재학연한) 전문대학원의 전문석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05.16.>

제32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 4. 28.>
② 천재지변 등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의 범위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9., 2023. 4. 28.>
③ 당초 학사일정에 따른 수업일(주)수를 단축하여 집중적으로 강의하거나 성적부여 최소 출석일수(시간) 충족이후 조기종강을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초빙 교수를 초청하여 계절학기에 개설하는 교과목에 대하여 수업일(주)수를 단축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9.2.>

제33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국정공휴일 및 개교기념일로 한다.
② 하계방학, 동계방학 기간은 따로 정한다.
③ 입학전형, 졸업식 등 기타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비상재해 등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총장은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9.>

제34조(보강계획의 수립 및 실시) ① 담당교수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32조 제1항의 수업일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작성하고,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33조제1항의 정기휴업일의 경우 보강계획을 수립하고, 학기 내 적절한 시간을 정하여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수업) ①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필요한 경우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통신 등에 의한 수업을 할 수 있다.

제36조(법학사취득자 학점인정) ① 전문대학원에 입학한 자 중 법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는 15학점 이내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②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법률기본과목군의 기초과목에서 선정하도록 하되, 전문·첨단과목 중 법학사 학위과정에서 통상 이수하는 교과목을 포함할 수 있다. 학점인정이 가능한 교과목의 범위는 학사내규로 정한다.
③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는 교과목은 법학사과정의 유사교과목 모두에서 A학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교과목에 한한다. A학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유사교과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문대학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05.16.>
④ 한 학기당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 수는 최대 6학점에 한한다. <개정 2011.05.16.>
⑤ 학점인정절차는 학사내규로 정한다.

제37조(편입학 학점인정) 편입학한 자는 다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중 3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된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외국의 대학과 공동으로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이 전문대학원과 외국대학 간에 체결된 협약에 따라 체결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5.16.>
③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육과정

제39조(기본원칙) ① 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은 자체 판단에 따른 자율적 결정에 의한다.

② 전문대학원의 자율적이고 탄력적인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교과목의 편성) ① 교과목의 편성에 있어서는 다음 제반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충실한 법학 기본교육의 실시
2. 법학 세부전공영역의 다양성과 미래지향성 확보
3. 이론교육, 실무교육의 조화와 법 분야 간 종합, 융합 도모
4. 국제적 법률수요에 상응한 외국법 이론, 실무의 체득
5. 졸업생의 실무응용, 현장적응 능력 배양

② 교과목의 편성에 있어서는 소속교원의 전공분야 및 강의·연구능력을 고려하여야 하고, 수강생·재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41조(교과목) ① 교과목은 법률기본과목, 실무과목, 기초법과목, 외국비교법과목, 전문·첨단과목(특성화과목 포함)으로 나눈다. <개정 2011.05.16.>

② 교과목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42조(필수교과목) ① 필수교과목은 35학점 이내로 개설한다.

② 필수교과목의 과목명과 학점은 따로 정한다.

제43조(필수실무교과목) ① 전문대학원은 법학전문대학원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필수실무교과목을 개설한다.

② 필수실무교과목의 과목명과 학점은 따로 정한다.

제44조(전공선택 및 특성화 과목) ① 전문대학원은 이론과 실무에 조화를 둔 균형있는 전공선택과목(특성화과목 포함)을 개설한다.

② 전공선택과목(특성화과목 포함)의 개설현황과 학점 수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

제45조(수료 학점 및 시기) 수료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96학점 이상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수료인정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5.16., 2013.2.1.>

제46조(학기당 이수학점) 교과학점은 매학기 21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다만, 계절학기 이수과목, 실습과정,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21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1.05.16.>

제47조(인정학점) 전문대학원에서 제적 또는 자퇴한 자가 재입학하였을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한 학점을 인정한다.

제48조(학업성적의 등급 및 평가) ① 학업성적은 시험, 과제물, 출석상황 등을 참작하여 상대평가하며, 그 비율과 방법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05.16.>

② 각 과목별 학업성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1.05.16.>

등급	A^+	A^0	A^-	B^+	B^0	B^-	C^+	C^0	C^-	D	F	P	F
평점	4.3	4.0	3.7	3.3	3.0	2.7	2.3	2.0	1.7	1.3	0		
득점	97-100	94-96	90-93	87-89	84-86	80-83	77-79	74-76	70-73	60-69	60미만	합격	불합격

제49조(재수강) 성적이 C+ 이하인 과목을 1회에 한하여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내에서 6학점까지 재수강할 수 있다. <개정 2011.05.16.>

제50조(수강정정 및 취소) ① 수강과목정정 및 취소는 개강 후 2주 이내에 실시한다. <개정 2011.05.16.>

② 수강과목취소는 학기당 1과목 이내로 하되, 필수과목 이외의 것으로 한다.

③ 삭제 <2011.05.16.>

제50조의2(최소이수학점) ① 학생은 매 학기(계절학기 제외) 12학점 이상의 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다만, 3학년 1학기에는 9학점, 3학년 2학기에는 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1.05.16.>

②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은 최소이수학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1.05.16.>

제3절 출결관리, 시험, 학사경고 및 유급

제51조(출결관리) ① 매학기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상 결석자에게는 성적을 부여할 수 없다.

② 출석점수는 10% 이내에서만 부여할 수 있다.

제52조(시험) ① 시험은 중간고사와 학기말고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다만, 과목의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6.>

② 시험의 시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사경고)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학사경고를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1. 5. 16., 2015. 9. 2., 2023.

4. 28.>

제54조(유급) ① 매 학년말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자는 유급한다. <개정 2011. 5. 16., 2015. 9. 2., 2023. 4. 28.>
②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 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로 된다. <개정 2011.05.16.>
③ 학년의 계산은 학생별 연속 2개 학기를 기준으로 하며, 휴학하는 경우에도 연속 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5.16.>
④ 유급자는 유급통보를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학사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1.05.16.>
⑤ 유급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의2(평점평균의 계산) ①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 산출시 제36조와 제38조에 따라 인정된 학점 및 외국어강의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한다. <개정 2011.05.16.>
② 학사경고 및 유급을 위한 성적 산출 시 계절학기과목에서 취득한 성적은 다음 학기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1.05.16.>

제4절 장학금·포상 및 징계

제55조(장학금) ① 전문대학원 재학생의 면학을 권장하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균형 있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포상) 매학기 성적우수자 또는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57조(징계)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은 교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징계한다.
1. 학칙을 위반한 자
2.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② 징계는 근신, 유기정학, 무기정학, 퇴학으로 구분한다. 다만, 퇴학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징계 시 해당 학생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졸업 및 학위수여

제58조(졸업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96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1.05.16., 2013.2.1.>

제59조(필수이수학점) 졸업을 위해서는 35학점의 범위 내에서 정하여지는 필수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5.16.>

제60조(졸업시험) 졸업을 위해서는 수료 마지막 학년에 실시하는 졸업시험에 응시하여 일정한 성적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재시험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1.05.16.>

제61조(졸업의 시기) 졸업은 전기졸업과 후기졸업으로 구분한다.

제62조(졸업 및 학위수여) ①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학위증을 수여한다.

1. 졸업에 필요한 학점(필수이수학점 포함)을 모두 취득한 자
2. 소정학기 등록을 필한 자
3. 졸업시험에 합격한 자
4. 졸업인정제에 따른 인정기준을 이수한 자. 다만, 졸업인정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4. 28.>

② 전문대학원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학위수여를 결정하고, 총장에게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이 전문대학원 학위의 종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수여학위 취소) 부당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시효에 상관없이 전문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은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자치 및 복지

제1절 학생자치

제64조(학생회)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전문대학원의 교육목표를 실행하기 위하여 학생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5조(학생지도 등) 전문대학원 학생의 학업 및 학생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도교수를 둘 수 있다.

제66조(간행물) 학생단체 또는 학생이 정기·부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교수의 추천과 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절 참법률가지도센터

제67조(참법률가지도센터의 설치) ① 전문대학원에 학생지도 및 상담을 목적으로 한 참법률가지도센터를 둔다.

② 참법률가지도센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3절 장애학생 및 여학생 지원

제68조(장애학생 차별금지 등) 전문대학원은 장애학생의 학습 및 학교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장애학생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장애학생이 학습 및 학교생활에서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장애학생 지원) ① 장애학생 지원은 참법률가지도센터가 담당한다.

② 참법률가지도센터의 장애학생 지원업무에 대해서는 참법률가지도센터운영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70조(여학생에 대한 배려) 전문대학원은 여학생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장 관련학위과정 및 법과대학

제1절 전문박사학위과정의 설치 <개정 2011.03.01.>

제71조(전문박사학위과정) ① 전문대학원에 법학전문박사학위과정(이하 "박사과정"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05.16.>

②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개 학기로 하며, 재학연한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5.16.>

③ 박사과정에서는 매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④ 박사과정에서는 재학 중 전공연구학점 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⑤ 박사학위과정 재학생으로서 4회 이상 등록을 필하고 교과학점 24학점 이상과 전공연구 6학점을 취득한 자에게는 박사학위과정수료를 인정한다.

⑥ 전문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학위논문을 제출하여 그 심사에 합격한 후 전문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은 자에게 총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학위를 수여

한다.

⑦ 입학자격, 입학전형, 교과과정, 학위수여 등 세부사항은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연구과정

제72조(연구과정의 설치) ① 전문대학원에 소정의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② 연구과정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서를 수여한다.

③ 연구과정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전문대학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법과대학의 운영

제73조(법과대학의 운영) ① 전문대학원의 개원과 함께 폐지되는 법학사과정의 기존 학부생들에 대한 교육과 학사업무는 기존의 법과대학이 담당한다.

② 법과대학의 조직, 학사관리 등 세부사항은「법과대학의폐지및임시의법과대학운영에관한규정」으로 정한다.

제73조의2(학사운영규정) 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6.9.2.]

제6장 학칙개정 및 준용

제74조(학칙 개정절차) 이 학칙은 전문대학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앙대학교 학칙개정절차에 따라 개정한다.

제75조(준용) 본 학칙 외에 전문대학원의 학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대학교 학칙, 일반대학원 학사내규 등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법과대학은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한다. 다만, 2008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동 대학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소속 재적생이 졸업하는 연도까지 변경 전 중앙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1.05.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은 2009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 취득학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이전에 취득한 학점은 평점평균 계산에 있어서 이 학칙 제48조의 표에 따라 변환하여 평점을 계산하되, A^+, B^+, C^+, D^+, F는 각각 A^+, B^+, C^+, D^+, F로 변환하고, A, B, C, D는 각각 A^0, B^0, C^0, D^0로 변환한다.

부 칙<개정 2013.2.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료 및 졸업 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45조 및 제58조는 2011학년도 신입학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과대학 조직운영 존속기한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과대학의 조직운영 및 명칭 사용은 2017학년도까지 존속・유지한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과대학의 조직운영 및 명칭사용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4조(법학사과정 운영기한, 학위취득 및 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학사과정에서 2012년 8월과 2013년 2월에 취득한 법학사 학위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법학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일 전 2012년 2월 28일자로 폐지된 법학사과정에 재적 중에 있거나 자퇴 등으로 인하여 제적한 학생에 대하여는 이 학칙에 따라 재적 또는 제적 학생으로서 학적을 유지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15.9.2.>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 제54조는 2014년 9월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하고, <별표 1>의 전문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은 2015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 칙<개정 2016.9.2.>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17.11.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개정 2020.08.3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전문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은 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3. 4. 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학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개정 학칙 중 제24조(휴학) 및 제62조(졸업 및 학위수여)의 개정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중 제24조(휴학), 제62조(졸업 및 학위수여)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종전 학칙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20.08.31.>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정원표

구분	전문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전문박사학위과정	입학정원
법학전문대학원(서울)	► 법학과	50	► 법학과	7

<별표 2>

법학전문대학원 수여학위

대학원	학과	전문석사학위(전문학위)	전문박사학위(전문학위)	비고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법학전문석사(JD)	법학전문박사(SJD)	

<별지 제1호 서식>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법학전문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법학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총장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석○○○○

<별지 제2호 서식>

박 제 호

학 위 기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박사학위과정을 이수한 후 논문심사에 통과하여 법학전문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법학전문박사학위를 수여함.

중 앙 대 학 교 총장 ○○○박사 ○ ○ ○ <직인>

학위번호 : 중앙대○○○○ 박○○○○

<별지 제3호 서식>

○ ○ 원
제 호

증 서

성명
19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이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분야에 관한 소정의 연구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중 앙 대 학 교 총장 ○○○박사 ○ ○ ○ <직인>